

입법의견조사 2000-4

입법의견동향

(2000.9.11 ~ 11.10)

2000. 11.

研究者 : 宋 永 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입법의견 현황	7
헌 정	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국경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통일 · 외교	9
◎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의견	
국 방	10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군사법원법 개정의견	
◎ 군인연금법 개정의견	
◎ 대인지뢰피해보상법(가칭) 제정의견	
◎ 병역법 개정의견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일반행정	13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내무 · 지방행정	15
◎ 경비업법 개정의견	
◎ 공무원연금법 개정의견	
◎ 소방법 개정의견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의견	
◎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문화·공보 19

- ◎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주류판매관련 입법의견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출판및인쇄진흥법(가칭) 제정의견

교육·학술 22

- ◎ 국립대학의 여성교수참여 확대관련 입법의견
- ◎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해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의견

노동 23

- ◎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 평등 관련법률 개정의견
- ◎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관련 입법의견

재정·경제 27

- ◎ 관세법 개정의견
-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 담배사업법 개정의견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의견
-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 세법관련 입법의견
-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의견
- ◎ 은행법 개정의견

-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의견
- ◎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전자자금이체법(가칭) 제정의견
-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의견
-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의견

통상 · 산업 39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의견
- ◎ 대외무역법 개정의견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의견
- ◎ 품질경영촉진법 개정의견
- ◎ 프랜차이즈업 관련법률 개정의견

농림 · 해양 43

-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의견
- ◎ 수산업법 개정의견
- ◎ 해양수산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건설 · 교통 44

- ◎ 건축법 개정의견
- ◎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견
-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 저공해차량 의무화관련 입법의견
- ◎ 지하수법 개정의견

과학기술 · 정보통신 51

- ◎ 기술사법 개정의견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견
-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견

환 경 53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보건 · 복지 54

- ◎ 생명과학인권 · 윤리법(가칭) 제정의견
- ◎ 약사법 개정의견

법원 · 법무 57

-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의견
-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 민법 개정의견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반공익사범 척결관련 입법의견
- ◎ 배심제 및 참심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 북한관련 법령 용어 정비의견
- ◎ 사법시험법(가칭) 제정의견
- ◎ 사형제도 폐지관련 입법의견
- ◎ 자금세탁방지 관련 입법의견
- ◎ 재외국민취적 ·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의견
- ◎ 헌법소원관련 입법의견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호주제 폐지관련 입법의견
- ◎ 회사정리법 개정의견

◎ 입법의견 현황(2000. 9. 11 ~ 2000. 11. 10)

입법의견조사 제2000-4호에서는 2000년 9월 11일부터 2000년 11월 10일 까지 두 달간 각종 언론매체, 학회세미나, 유관단체 토론회, 공청회, 정부부처 및 정당자료 등에 공표되거나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89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개정의견은 77건, 제정의견은 12건이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의 분류체제를 참조하여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현황

분 야	건 수	제정의견	개정의견
◎ 헌 정	2	·	2
◎ 통일·외교	1	·	1
◎ 국 방	6	1	5
◎ 일반행정	1	·	1
◎ 내무·지방행정	6	1	5
◎ 문화·공보	5	1	4
◎ 교육·학술	3	·	3
◎ 노 동	4	·	4
◎ 재정·경제	19	2	17
◎ 통상·산업	7	1	6
◎ 농림·해양	3	1	2
◎ 건설·교통	10	2	8
◎ 과학기술·정보통신	3	·	3
◎ 환 경	2	1	1
◎ 보건·복지	1	1	1
◎ 법원·법무	15	1	14
총 건 수	89	12	77

헌 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선거법 개정의견

- 16대 총선사범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선거법’상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일선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한 후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바, 현행의 문제점으로 △현역·비현역 후보, 무소속, 정당 후보간 차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된 전과공개 범위 △공소시효에 임박한 고소·고발 제한조항의 미비 등이 있음. 따라서 △후보간 차별을 없애고, △후보의 전과공개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범 고소·고발시한을 공소시효 완성 전 일정시기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기로 함. 특히 △혼탁, 타락 선거를 부채질하는 선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법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사범처럼 선거브로커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함(대검찰청,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국경제 2000. 10. 15; 문화일보 2000. 10. 16).

◎ 국경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일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고, 말과 글은 민족문화의 요체로 ‘한글’은 우리 문화를 담는 그릇인 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민족문화를 개화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기념일로만 지정된 한글날(10월9일)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신기남 민주당 의원, 한국경제 2000. 9. 26; 경향신문 2000. 9. 27).

◎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의견

- 여성계는 그동안 미군들의 크고 작은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기지촌 여성들이었음을 고려하여 ‘한미행정협정(SOFA)’에 여성인권보호조항의 신설을 요구한 바, 그 골자는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금지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 적극 주선 및 친부 양육비 부담 조치, △미군 대상 성적 서비스 제공 여성지원, △미군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교육 의무화, △모성 보호를 위한 환경관련 조항 등의 신설임. 여성계는 앞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국회 청원도 추진할 계획임(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새움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최,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정책간담회』, 국민일보 2000. 9. 25).

국 방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선출직 공직자와 1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의무이행 전과정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최종 병역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사유, 병역처분 변경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병무청, 일간스포츠 2000. 10. 16).

◎ 군사법원법 개정의견

- 군법무관이 판사와 검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군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함. 이에 따라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군판사로 임용하게 되며 해당 변호사는 군판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됨. 군판사로 임용되는 변호사의 봉급과 대우에 대해서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함(국방부,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2000. 10. 31).

◎ 군인연금법 개정의견

-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군인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양면성을 유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함. 군인들이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하게 되어 있어 연금지급개시연령(만 60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선진국들도 대부분 군인에게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등 군인만의 특수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공무원에게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연금지급금지 조항(재취업시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차등지급)을 제외하여 현재는 중상으로 분류된 7등급까지만 상이연금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4등급까지로 확대하여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3개 이상의 치아에 대

해 초과 보철을 한 사람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자에게도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이연금 등급규정을 보완하고,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 일시금 조정도 포함함.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일반공무원들 사이에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연금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무원 연금재정보다 군인연금재정이 더 열악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국방부, 대한매일 2000. 11. 10).

◎ 대인지뢰피해보상법(가칭) 제정의견

- 지금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은 11건, 총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한국전 이후 대인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위한 ‘대인지뢰피해보상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 준비중인 법률안은 △국방장관이 민간인 전문가 4명을 포함한 9인 이내로 된 ‘대인지뢰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한국전 이후 모든 대인지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인지뢰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민주당 김성호, 한나라당 김형오의원 등 여야의원, 한겨레 2000. 10. 16).

◎ 병역법 개정의견

- 뇌물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부과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함.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공직자의 경우 최종 병역사항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병역의무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1급인 개방직공무원도 병역사항 신고대상에 포함됨(국방부, 한국경제 2000. 10. 16).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3년 범위내에서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9급의 경우 현재의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높아지게 되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부여하되 연장기간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하고, 하루 종업원 고용숫자가 20인을 넘는 2만여개의 공·사기업체에도 이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함(규제개혁위원회, 한겨레 2000. 10. 30).

일반행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공무원인 경우에 성명·직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최근의 판공비 공개 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공무원이냐 아니냐로 양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식사나 현금 등의 혜택을 받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에 의해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 신뢰보호 및 업무협조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일 것이나 현재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는 무조건 제3자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하는 예에 비추어 볼 때, 이의 남용이 우려됨. 즉,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는 것도 그 특징이 어려운 바, 종전 규정대로 제3자의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등으로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면 충분하고, 법인 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보호와 관련있는 정보의 비공개조항으로 해결하면 됨.
- 국가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조정을 목적으로 내부 또는 상호간의 회의·협의·권고·조언·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추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대상 조항으로 해결이 가능한 바, 별도로 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음.

<전문기구 설치에 관하여>

- 불복신청의 심사·결정·정보공개 제도의 제도개선 등의 사무수행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법률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만을 들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위원회제도’로 못박아 그 조직·운영·권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까지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가 갖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 정보공개제도의 특성상 소송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심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무총리산하에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별도의 행정심판 권한을 가진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완화에 관하여>

-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안이하고 행정편의적이며 주객이 전도된 발상으로 시행령에서 이러한 조항을 첨가하게 되면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무시하게 될 뿐 아니라, 위임권한 밖의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이 시행령은 법률위반임. 만약, 업무부담의 완화를 생각한다면, 종전에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가 있었다면 이러한 공개내용을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즉시 이용가능토록 하면 될 것이고, 만약, 거부하였던 것이라면 재차 청구한 시점에서 그 당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함.

: 이상 참여연대주최,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 시민 공청회, 2000. 10. 31.

◎ 경비업법 개정의견

- 공항, 발전소, 전화국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업체의 특수경비원도 앞으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함(규제개혁위원회, 대한매일 2000. 10. 10).

◎ 공무원연금법 개정의견

- 재정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대량퇴직으로 연금 지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데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수지 적자폭이 98년부터 3년 동안에만 6조2천억원이나 되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5년까지 누적적자는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인 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하여 연금기금 재정을 정상화해 나가도록 함.

<연금법 적용대상>

개정되는 연금법은 현재 연금 기여금을 납입하고 있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퇴직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됨. 이중에서 물가연동제는 퇴직한 사람과 퇴직할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고, 연금산정 기준은 현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도록 함.

<연금 지급개시 연령>

2001년에 50세를 시작으로 2년에 1살씩 올려 2021년 60세까지 올리도록 할 방침으로 법 개정 당시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일정 기간을 더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조기감액 연금제도>

재직기간은 20년이 넘지만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퇴직하는 사람을 위하여 '조기감액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하는 해와 연금지급 개시연도 차이가 5년 범위내일 경우에 1년에 연금 5%씩을 감액·지급하도록 함.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부득이 퇴직했을 경우도 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되도록 함.

<정년이 57세인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정년이 60세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정년 나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법'도 연금 수급자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연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 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별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일정액을 감액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상 재정경제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0. 10. 9; 대한매일 2000. 10. 20; 동아일보 2000. 10. 27.

◎ 소방법 개정의견

- 현재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살롱) 등 다중이용업소에 방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을 추진중인 바, △법 개정 전에 허가를 받거나 규모가 작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다중이용업소들도 앞으로는 피난시설과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하층 66㎡ 미만 또는 지상 2층 이상 일반음식점도 사실상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위치한 150㎡ 이상 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가 부실한 업소에는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 시행 전에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 방화시설 설치 및 실내장식불연재 사용 등 ‘소방법’ 중 일부 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행정자치부, 경향신문 2000. 11. 10).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의견

-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해 불법광고물이 난립해도 처벌 규정이 약해 단속이 미미한 바, 옥외광고물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200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과태료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여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후에도 광고물 표시를 계속 하는 대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함(행정자치부, 대한매일 2000. 9. 13; 문화일보 2000. 9. 14; 한국경제 2000. 9. 19).

◎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가칭)’안을 마련한 바, 지금까지 종이문서로만 제출토록 규정된 각종 법령 조문을 보완하여 컴퓨터를 통한 전자결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처간에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함(행정자치부, 스포츠 투데이 2000. 10. 3).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단체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했을 경우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

치단체와 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된 바, 이에 따르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폭 축소,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등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행정사무를 집행할 대리인을 임명해 해당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자치단체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 사실과 내용을 언론 등에 공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면경고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시 국무총리 소속의 서면경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들의 인사, 재정권 전횡을 주민이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과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임(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경향신문, 내외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2000. 9. 15; 중앙일보 2000. 9. 17; 매일경제, 문화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2000. 10. 12).

◎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영화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 상영가(可)’ 등급을 신설하고, 이들 영화는 19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상영관’에서 상영하도록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전체, 12세, 15세,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되어있는 영화상영등급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 되고, △‘제한상영가’ 영화는 성과 폭력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유통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상영, 판매, 전송, 대여할 수 없으며,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되는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일반영화나 비디오물은 상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임. 이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의 중복을 막기 위해 수입추천시 등급심의를 병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임(규제개혁위원회,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2000. 10. 5;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2000. 10. 11).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음반, 비디오, 게임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문화관련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18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통일할 방침인 바, 성인용 영화와 비디오, 공연물의 관람허용 연령이 출생연도 기준 19세로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3등급으로 되어있는 비디오 등급분류에 중·고교생 관람가능등급을 신설,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등 4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함.

△청소년들이 선정성과 사행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에 무차별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게임장을 청소년전용 게임장과 일반 게임장으로 구분하기로 하며, △일반게임장에는 청소년용 및 성인용 게임기의 설치를 모두 허용하되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용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고, △음반, 비디오, 게임물 단속을 담당하는 4~9급 일선공무원 5백여 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문화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음반, 비디오,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비디오, 게임물 판매 및 대여업은 자유업종화하기로 함. △청소년 전용게임장의 경우도 2001년까지만 사전신고 하도록 하고 2002년부터는 자유업종화 하되 일반 게임장은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PC방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함 (규제개혁위원회, 경향신문 2000. 10. 5).

◎ 주류판매관련 입법의견

- 청소년 음주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주류 전문소매점 제도를 도입,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임. 이 제도는 술을 별도의 면허를 받은 전문소매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식료품점·슈퍼마켓 등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팔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되며, 식료품점·슈퍼마켓 등이 술을 팔려면 엄격한 법·사회적 자격요건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발급도 지역별 인구수 등에 따라 제한돼 술 판매가 제한되게 됨.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면허 대상을 2002년 30도 이상, 2003년 20도 이상, 2004년 10도 이상, 2005년 5도 이상 등으로 정하는 등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며, 주류전문소매점에 대해서도 알코올 도수에 따라 면허를 3개 종류로 세분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술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함(청소년보호위원회, 경향신문 2000. 11. 5).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용돈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에 나서는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불입건해온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호시설에 맡겨 재교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호사건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서울지검 소년부, 스포츠 서울 2000. 10. 22).

◎ 출판및인쇄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온라인서점의 할인공세에 견디지 못한 대형서점들까지 할인판매에 나선다면 전국 3,500여 서점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는 덤핑경쟁을 하는 온라인서점들도 잇따라 붕괴하는 등 도서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될 것인 바, 도서정가제의 근간이 되는 ‘출판및인쇄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함(문화관광부, 대한매일 2000. 9. 28).

교육 · 학술

◎ 국립대학의 여성교수참여 확대관련 입법의견

- 여교수의 신규채용 및 보직현황을 대학재정평가 항목에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국립대학의 여교수 보직 참여율이 30% 이상 되도록 제도화하여, 여교수의 교육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진출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교육부, 『여성교육정책 안내 소책자 <양성평등 학교문화, 우리 함께 만듭니다>』, 한겨레 2000. 10. 9).

◎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의견

- 외국어학원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개별 강의실 당 면적제한을 자율화하며, 수강료도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및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경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기본시설이 330㎡(100평) 이상이어야만 학원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를 150㎡(50평)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하고, △학원설립 시설기준을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 규정을 삭제, 시설기준을 법령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신설 제한을 위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책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함. △1대1 교습이나 그룹강의가 효과적인 외국어학원의 특성을 고려, 개별 강의실 당 면적을 최소 15㎡(4.5평)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폐지하여 학원 내 강의실 면적을 현재보다 소규모로도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현재 86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 중 하나로 분류하여 가격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외국어학원 수강료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자율화하기로 함(규제개혁위원회, 경향신문 2000. 10. 6).

◎ 해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지금까지 해외유학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자연과학, 기술, 예·체능 분야의 전국 또는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해 오던 규정을 고쳐 중학교만 졸업했다라도 시·도 규모의 자연과학 등 각종 경시대회 등에 입상했을 경우 자비 해외유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교육부, 국민일보 2000. 11. 8).

노 동

◎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 노사정위원회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현재 연간 2,500시간에 달하는 실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기로 하며,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노사 자율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과 휴일·휴가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실제 사용하는 휴일 및 휴가를 늘려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실시하기로 함.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및 주 5일 근무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학교수업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 확충 등 사회적 환경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노동부,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2000. 10. 23; 한국경제 2000. 10. 2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관련》

<경제계>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강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며 더구나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도 반하는 것임. 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도우미 등 자신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업무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들과 같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을 노동법을 통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 경제계는 업무 특성상 노동시장 유연성이 완전히 보장돼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근본적으로 상반되므로 기업의 전문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1년인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선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함. 고용보험을 1개월 미만 고용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행정비용 증가와 사회보험 재정 부실을 조장할 뿐 아니라 영세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므로 아직 도입이 시기상조임(한국경영자 총연합회).

<노동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요구와 관련법 개정청원을 통하여 현 노동관계법상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 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 조항을 신설하고, △기간제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 사용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관련 조항들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내외경제 2000. 10. 6; 경향신문 2000. 10. 25; 한겨레 2000. 10. 26).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철도, 통신, 은행, 가스, 전기, 수도 및 대도시 시내버스 등이 모두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파업에 제한이 따르는데 반하여 항공기 조종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항공기 조종사들이 파업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항공사를 노동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중임.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노조는 쟁의발생 후 15일간의 조정기간(냉각기) 동안은 물론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하는 또 다른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 기간 동안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중재안을 내도록 하고 그 결정은 노사가 모두 수용하도록 하고 있음(노동부, 중앙일보 2000. 10. 23).
- 공무원 및 실직자의 단결권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법개정을 국회에 청원한 바, 이 청원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비롯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등 3개 부분에서 15개 항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담고 있음(민주노총, 경향신문 2000. 11. 9).

◎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 평등 관련법률 개정의견

-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하고,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30%선에서 임금을 보전해주시기로 하였으며, 여성이 유·사산시에도 30일 이상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임신부의 태아검진휴가(월 1회), 가족간호휴직제도(연 1회, 3개월 한도)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음(당정, 중앙일보 2000. 10. 1; 경향신문, 동아일보 2000. 10.11).
- 출산 및 육아 문제는 여성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바,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100일로 확대해야 하고, 유급출산휴가 비용 등 모성보호비용을 여성 개인이나 기업에게만 전담시켜서는 아니됨(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 경향신문 2000. 11. 2; 내외경제 2000. 9. 21).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의 30% 가량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01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257억원을 반영하기로 함.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여 그동안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고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휴직종료 후 근로자가 휴직전과 동일한 부서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보장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 휴직제도’를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노동부, 경향신문 2000. 9. 18).

◎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관련 입법의견

-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중상·중병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인권옹호 차원에서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응급의료지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부처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적용해 의료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큰 병을 앓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기관별로 응급치료 및 진단을 실시한 뒤 기금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하였음(법무부, 서울경제, 한겨레, 한국경제 2000. 9. 15).

◎ 관세법 개정의견

- 관세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녹색신고업체로 지정하여 검사비용 축소, 심사생략 등의 각종혜택을 부여하는 ‘성실업체 심사간소화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녹색신고업체 지정 요건은 최근 3년 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2년 간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사실이 없고 수입신고 오류발생률이 낮은 업체임. 녹색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담보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용담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미 신용담보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담보한도액을 대폭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며, 수입서류제출 생략, 수입화물 즉시 반출제 등 신속한 통관을 허용하고 방문심사도 생략하도록 할 예정임(관세청, 내외경제 2000. 10. 27; 서울경제 2000. 10. 29; 전자신문 2000.10. 30).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연기금에 대한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 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바, 법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하기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통합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운용방법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임. 이와 함께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 등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내부운용지침에 주식투자 결과와 관련하여 운용담당자에 대한 책임면제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투신사, 자산운용

사 등 전문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함. △장기적으로 투자품을 제도화하여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재정경제부, 경향신문 2000. 10. 15).

◎ 담배사업법 개정의견

- 현재 국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은 90%수준이지만 이는 품질보다 유통상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현재와 같은 공기업 독점체제로는 외국산 담배와의 경쟁력 유지에 한계가 있는 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함. 법개정으로 농가 지원에 대한 공사의 법적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경작자와 공사간 장기협약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고 폐작농가에 대한 보조금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피해는 크지 않을 것임(재정경제부, 문화일보 2000. 10. 27).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능화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계좌추적권을 항구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으며, 위장계열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된 계좌추적권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바, △2001년 2월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사용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와 함께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 지주회사의설립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하루 200만원, 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에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신고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사 제도를 신설하며, △공정거래사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밖에 현재 5년인 범위반 사건의 시효를 넘기더라도 법원판결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공정거래위원회,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2000. 9. 13).

-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 거래 조사가 불시에 실시되고 있어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바,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중 일정한 시기에 정기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의 횟수를 줄여 1년에 한번 정도로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정기조사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고, 과도한 서류제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으며, 조사의 실효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됨. 반면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징금만을 부과해왔으나 2001년 부터는 사직당국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한차례도 법 적용을 한 적이 없는 외국회사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임(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초청강연, 2000. 9. 20; 경향신문 2000. 9. 20).

◎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의견

- 민간자본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재정지원, 사업제안내용 보호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위한 민간의 투자제안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사업 주체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제안서 접수 15일 이내에 사업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제안서 반려가 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본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라 할지라도 제안자 동의 없이는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더라도 제안자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은 공고내용에 담을 수 없게 됨. 이와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을 벌이는 주무 관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 민간사업자를 2

인 이상 지정하도록 해 경쟁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당초 예정대로 현재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해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국내외 민간자본 참여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배철호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한국경제 2000. 10. 25).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상호신용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도입 대상 금고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당초 신용금고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 대형 금고에만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을 둘 수 있도록 자산규모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임. 현재 모든 은행·종금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증권·보험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투신은 6조원 이상이 도입대상임. 이와 함께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으로는 금고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간 금융관계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을 때도 인수자격이 없도록 하는 설립요건에 준하여 신용금고 인수요건을 설립요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함(내외경제, 대한매일, 중앙일보, 세계일보 2000. 10. 29; 경향신문 2000. 10. 30; 한국경제 2000. 11. 9).

◎ 세법관련 입법의견

-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개정세법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등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당초 2000년 말에서 2005년 말로 5년간 연장하며, △경유, 등유 및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2001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의 소득공제가 이

루어지도록 하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001년에는 불입금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 되고, △2000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하며, △2000년 9월부터 2001년 말까지의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 함(재정경제부, 문화일보 2000. 9. 26).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자사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스스로 결함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게 중요한 바, ‘결함정보 보고 의무화’와 ‘리콜 권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1년 상반기부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비자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 권고제’를 도입하도록함(규제개혁위원회, 한국경제 2000. 10. 16).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바, ① 신용평가기관이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관계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이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②신용평가업 설립요건은 △신용조회업(자본금 50억원)에 준하도록 하고, △자본잠식으로 순자산이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거나 다른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용정보업에서 퇴출시키도록 하며, △신용평가업을 금융감독원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신용정보업자는 허가요건인 금융기관의 50% 이상 지분유지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함. 이와 함께 ③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만을 금지해온 규정을 고쳐 개인의 사생활이나 업무,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재정경제부, 경향신문 2000. 11. 2).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종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 개정안에 따르면 별단·당좌예금 등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결제성 예금은 2003년까지 예금 전액이 보장됨(재정경제부, 세계일보 2000. 10. 23).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의견

- 200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는 현금과 기계 같은 자본재나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산업 재산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서 외국인도 인터넷 콘텐츠나 전자상거래 기술, 비즈니스 모델(BM) 같은 지적 재산권이나 부동산 및 주식으로도 국내기업 지분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보유 주식을 국내기업 주식과 맞바꾸는 '주식 교환(stock swap)'이 전면 허용되어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따르면 1인의 외국인 투자자가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주던 규정이 완화되며, 자동차 제조와 부품 산업처럼 연관성이 큰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외국인이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할 예정임. 다만 주식 교환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함(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조선일보, 서울경제 2000. 10. 5).

◎ 은행법 개정의견

- 현행 4%로 묶여 있는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너무 경직적이며 외국인의 경우 10%까지 취득할 수 있어 내외국인간 역차별 문제도 안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바, 법개정을 통하여 은행소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 에서 8~10%로 크게 상향시킬 예정이며, 대기업의 금융지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임(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동아일보 2000. 10. 26).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의견

- 현행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민사절차를 거처도록 하고 있어 휴업수당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된 휴업수당도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기로 함. 개정안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도산 직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주 부담금 비율(현행 0.09%)을 낮출 예정임. 이와 함께 기업도산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조정절차와 시기를 단축하여 경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한 규정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에서 ‘노동부장관고시’로 변경할 계획임(노동부, 매일경제 2000. 9. 17).

◎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바, 여야는 재정적자 감축과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내외경제, 매일경제 2000. 10. 12).

◎ 전자자금이체법(가칭) 제정의견

-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체제를 구축·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인 바, 이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정영훈 벤처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전자상거래 국제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특별위원회 주최,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2000. 9. 22; 내외경제 2000. 9. 22).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부처와 일선 행정기관은 물품조달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공공기관은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또는 3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구축, 운용중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야 하며, 조달청장이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을 우수 조달제품으로 지정하여 인터넷이나 전시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업체와는 미리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공급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도록 함(재정경제부, 전자신문 2000. 9. 14).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증권거래소 이사회를 공익이사와 회원사인 증권사 대표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함.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를 증권업협회에서 분리하여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고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임이사 4명을 이사회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사외이사 체제로 개편하기로 하며, 현재 이사장과 전무 상임이사 4명, 공익대표 3명, 회원사 대표 2명 등으로 구성된 증권거래

소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4명을 배제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하기로 해 증권거래소 이사회 7명의 이사 중 5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또한 코스닥시장이 증권업협회의 간섭을 지나치게 받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위원회를 독립된 법적 단체로 규정하고 설치근거와 업무를 법률로 정하기로 함(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동아일보 2000. 11. 1).

《증권집단소송제·집중투표제 관련》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유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기업구조 개선의 핵심과제인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현시점에서의 도입은 소송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임.

<찬성론>

금융시장 스캔들과 지연되는 기업 구조조정은 지배주주나 총수들을 마땅히 견제할 수 없는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주주들이 비양심적으로 그들만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고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주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현재 대주주의 전횡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고란하며,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제 받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바, 비양심적인 기업주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부당지원,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나, 비용면에서 실질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

리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 또한 대주주가 악의를 갖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억제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일부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우리 소송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소송의 남발이 우려된다고, 도입에 대하여 시기상조 반대론을 내세우고 있음. 집단소송제는 하루아침에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무려 10년 전부터 연구되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지배주주나 총수가 다수의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를 달리 견제할 방법이 없고, 투자자 보호대책이 가장 잘 되어 있고 증권시장이 우리의 300배에 달하는 미국도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연간 300건도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의 남발 소지가 적음을 알 수 있는 바, 제도의 도입을 미룰 여지가 없음. 기업의 핵심결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는 특정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를 대표해야 하는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 이사 대부분이 오직 지배주주나 총수의 이해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야만 소액 투자자들이 적어도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그들의 권리남용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 일부에서 소액주주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소액 투자자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가며 회사의 이익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칠 이유는 없음 (김준기 연세대 교수).

<반대론>

증권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우리 현실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국 의 경험에 비추어 긍정적 효과보다는 기업경영 및 경제전반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음.

- 먼저 집단소송제는 ①전세계적으로 소비자 및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소송과 구별하여 독립 단행법으로 증권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한 전례도 없고,

영미식 법체계와 다른 우리 법 체계상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존재함. ② 남소(濫訴) 가능성이 높음.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예를 볼 때, 피소 기업과 제소 변호사간의 비대칭적 위험부담과 30%에 이르는 변호사 수입료 인센티브로 인하여 잭팟(Jackpot)을 노리는 전문브로커와 변호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국민 1만명당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에 비하여 103배, 436배에 이르는 우리의 소송만능주의 법의식 수준과 추가하락 및 신탁투자 손실 책임을 정부에 묻는 우리의 투자의식을 볼 때 남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③의도하는 목적달성은 힘든 반면 부작용이 큼. 추가조작은 기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금융감독상의 사소한 공시위반 및 불성실 공시·보고에 대한 제재도 소송 근거가 된다는 점, 95% 이상이 판결 전 합의로 종결되고 합의금은 손실액과 상관없이 시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는 합법적인 공갈 수단화되기 쉽고 자칫 추가하락에 대한 보험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음. ④기존 제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다수 피해자를 위해서는 이미 선정당사자제도가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우선시 해야하며, 사전적 경영투명성을 위해서는 이미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대표소송제, 외부회계감사제도, 기업평가제도, 결합채무제표제도, 공시제도, 세무행정 등 다양하고 중복적인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 효과는 미지수이면서 부작용의 피해는 엄청난 집단소송제를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가 현명한 방안임. 한편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출시 주당 선출 이사수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결권을 특정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 이유로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들고 있으나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와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전혀 무관치는 않으나 실제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관련되는 제도이며, 일본에서도 1950년부터 1974년까지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다가 현재의 우리와 같이 기업자율에 맡겨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그 이유는 이사회가 1대, 2대, 3대 주주의 파벌집단으로 변질되어 경영효율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나 경영투명성과는 무관했던 것임.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로 1945년에 37개주에서 의무화했던 것이 현재는 기업이 없는 6개주만 이를 존속시키고 있는 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함(김석중 전 경련 상무).

: 이상 경향신문 2000. 11. 9; 국민일보, 서울경제 2000. 11. 6; 전자신문, 중앙일보 2000. 10. 28; 문화일보 2000. 10. 27; 한국경제 2000. 10. 21; 내외경제 2000. 10. 7, 2000. 10. 16; 한겨레 2000. 10. 11; 대한매일 2000. 10. 6.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의견

- 투신운용사가 펀드를 위법 운용하여 생긴 손실에 대해 고객들이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위탁회사(운용회사) 등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회사가 법령이나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가입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과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도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또한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해 상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재정경제부, 경향신문 2000. 10. 15).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의견

- 기업인수, 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펀드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뮤추얼펀드가 발생한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함. 또한 뮤추얼펀드가 신탁자산으로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차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재정경제부, 중앙일보 2000. 9. 19; 경향신문 2000. 10. 1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의견

- 최근 시화공단 내 LPG 자동차 용기 제조업소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용기 제조업소나 정비업소·폐차장 등에서 안전한 용기수리와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LPG 자동차 용기의 수리 또는 폐기시 용기에 남은 가스를 반드시 잔가스처리설비를 사용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고압가스 관계 법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함(산업자원부, 서울경제 2000. 10. 9).

◎ 대외무역법 개정의견

- 그동안 살아있는 소(生牛)의 수입을 금지한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하여 2001년부터 생우 수입을 가능토록 하고 생우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특히 생우 및 육류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소의 출생국과 도축국이 다른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 한하여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해 국산육우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6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 소가 국산 소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우로 표시할 수 없고 육우로만 표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임. 이는 외국에서 생육된 소가 국내외 가격차이를 노려 무분별하게 수입, 유통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위생검역상 잠재적 위험요인을 원산지 추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임. 이미 생우 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경우 소는 수입 후 3개월 이상 사육된 뒤 도축되었을 때만 일본산으로 인정하고 돼지는 2개월, 닭 등 다른 가축은 1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국적취득 기준이 일본보다는 길고, 국내에 들어와도 일정기간 사육하도록 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수입자유화에 따른 쇠고기시장 교란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농림수산부,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2000. 10. 17).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다단계 판매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단계 판매회사가 영업실적과 수당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2001년부터 다단계 판매회사는 판매원을 모집할 때 매출액과 평균 수당 등 판매원의 가입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고, 도산 등으로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 다단계 판매회사의 계약 위반이나 환불 거부 등 불법 행위를 직접 다루기 위한 직권 조사권을 신설하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현재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음(공정거래위원회, 경향신문, 내외경제, 매일경제, 한겨레 2000. 10. 26).
-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통신·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위하여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가칭)’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으로 이원화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보험과 가입의무 대상을 명문화하여 △방문판매업자의 경우는 그 동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매출액의 일정분을 예치금으로 쌓아 두도록 하던 것을 고쳐 2001년부터는 소비자 피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전자상거래 업자와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있음. △새로 도입되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배상책임보험을 보증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종 공제조합 등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품질 불량이나 반품불편,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조사면제와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도 주기로 하였음(공정거래위원회, 내외경제 2000. 11. 10).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최근 UN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서 그 후속 의무조치로서 유전자를 변형한 농수산물 등의 경우 정부책임 아래 인체유해성 등 각종 안정성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상품화시킬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고자 함. 새로 제정될 법률에는 유전자 변형 상품들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주무부처가 산하 정부연구소등을 통해 안전성을 심사하여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의 취급·포장·운송시의 의무적 안전조치 조항과,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상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이들 상품의 안정성 문제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과학기술부등 각 부처 책임자가 참여하는 ‘바이오안전성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함(산업자원부, 중앙일보 2000. 9. 1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의견

-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 냉장고 1백3kW, 에어컨 5백62kW까지 유통할 수 있던 것을 냉장고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시간당 85kW미만(가정용 5백89ℓ짜리 기준), 에어컨은 5백35kW미만(가정용 6천1백kcal짜리 기준)인 제품에 한해서만 시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기로 함. 이같은 전력소비 허용기준은 현행보다 냉장고 30%, 에어컨은 7% 낮아진 것으로 수입 외제 냉장고, 에어컨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며, 1등급 제품의 전력소비 기준도 냉장고는 시간당 47.2kW(현재68.5kW), 에어컨은 4백10kW(현재 4백32kW)로 낮추도록 할 예정임. 이와 함께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해서도 2001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열효율이 72%에 못미치는 제품은 유통을 금지하기로 함(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일보 2000. 9. 27).

◎ 품질경영촉진법 개정의견

- 불량 공산품 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품질경영촉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량 공산품 유통시 행정 관청이 시정, 파기 또는 수거만

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출고된 제품이 그대로 시장에 남아 있게 되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관청이 불량 제품을 직접 파기, 수거하고 불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교환해 주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산품에 대한 성분과 성능, 규격 등에 대한 식별이 쉽도록 품질표시 기준을 정하며, 이를 제조, 판매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함(산업자원부, 한겨레 2000. 9. 21).

◎ 프랜차이즈업 관련법률 개정의견

-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업과 같이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가맹점이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완제품 가격을 규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함. 현재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료, 복장, 영업시간 등과 함께 가격도 똑같이 받도록 가맹본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똑같은 브랜드의 햄버거 가격이 가맹점마다 제각각 다르게 책정될 것임(오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중앙일보 2000. 9. 14).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의견

-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반대리점의 경우 등급제한 없이 시·군·구 단위로 1개의 사후봉사 시설만 갖추면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까지 반드시 사후봉사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고, 이 때문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들이 농기계를 공급할 수 없어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에는 중복투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 제도의 개선이 요청됨(농업협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매일경제 2000. 10. 3).

◎ 수산업법 개정의견

-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장의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 되어야 함(세계일보해설 2000. 10. 23).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최근 해양수산물 현안들이 기존 ‘해양개발기본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사항으로 변화했고, 해양수산물 전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실효적 규범 제정이 요청되고 바, 해양수산물 전반에 걸친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 법 초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한국해양재단 설립 및 기금 확보를 위한 해양복권 발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이용우 해양수산물부 해양정책국장, 대한매일 2000. 10. 26).

◎ 건축법 개정의견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광릉 숲 완충지역 안에서 아파트건설이 마구잡이 식으로 허용되어 상수원과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규정에 ‘자연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내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시·군이 허가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함(경기도, 경향신문 2000. 10. 9).
- 일반 주거·상업지역 등 기타 지역·지구에 접해 있는 녹지지역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경우 녹지지역에 들어서는 건물 부위에 대해서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의 건축제한을 엄격히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이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편입돼 있어 고층 아파트 건설이 허용됐던 경기 광주·양평·남양주·양수리 일대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녹지와 주거지역이 맞물려 있는 곳에 들어서는 건물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합산해 나눈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게 됨. 도지사가 자연환경·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수목원이 있는 광릉 등 일부 지역에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할 예정임(건설교통부, 국민일보, 한국경제 2000. 11. 8).

◎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전면 재조사해 용도를 세분·재조정하고, 세분된 용도지

구별로 관리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준농림 지역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국토이용계획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준농림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함.

: 이상 오장섭 자민련의원 등 여야의원 23명,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 2000. 10. 10.

◎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2002년 1월부터 준농림지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하며, 2005년까지 수립해야 하는 시·군의 국토도시계획 시행 이전까지는 준농림지에 대해 용적률 80%, 건폐율 20%의 강도높은 이용 규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3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도 체계적 개발을 위한 특별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구역), 보전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되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녹지지역도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되며, △난개발의 근거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는 폐지되는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기반시설연동제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은 부담구역을

설정,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기반시설 연동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개발계획과 밀도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함(건설교통부, 한겨레 2000. 9. 28, 2000. 10. 13; 국민일보 2000. 10. 15).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현행 도로교통법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 교차시 넓은 도로 진행차 우선,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와 우회전 차량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바, 과속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이상 초과할 경우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를 위해 △현재 2단계(초과 속도 시속 20km 이하시 범칙금 3만원, 20km 초과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로 되어있는 과속처벌 기준을 초과 속도 시속 20km 이하, 21~40km, 41km 이상 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2대의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만났을 때 우선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우선권(right-of-way)’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경찰의 사고 처리와 보험회사의 과실 책임 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함(안전관리개선기획단, 동아일보 2000. 11. 8).

◎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 생활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세무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변태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자연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상업지구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 공터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상 절대 정화구역은 50m, 상대 정화구역의 경우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늘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함(당정, 중앙일보 2000. 9. 30; 경향신문 2000. 10. 2; 대한매일 2000. 10. 11; 세계일보 2000. 10. 23).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바,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을 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대료 인상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상가 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한겨레 2000. 9. 2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견

- 2001년부터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 프랜차이즈(가맹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가용 위장등록, 불법 택시영업 등 렌터카의 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외부에 사업자 명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바, 렌터카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의 조세 감면폭을 축소하거나 감면혜택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함. 2000년 말 폐지 예정이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량제한을 계속유지하기로 하되 개인택시 등에 한해 현행보다 차량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규제개혁위원회, 경향신문 2000. 11. 6; 대한매일 2000. 11. 7).
-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로 아파트 상가 등의 영

세·재래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택시·버스업체와 노선이 겹치는 등 운송업체와 심각한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외에도 요금을 받지 않는 셔틀버스의 전면 운행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버스노선과 겹치지 않는 노선의 운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함(박광태 민주당의원, 김문수 한나라당의원 등 여야의원 54명은 공동발의, 대한매일 2000. 10. 10; 한국경제 2000. 10. 18; 매일경제 2000. 9. 22).

- 렌터카 사업에 프랜차이즈제도를 도입하여 대형업체들이 지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1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임. 현재 렌터카 사업은 직영경영체제를 원칙으로 차량 1백대 이상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단일상표로 전국 체인망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렌터카를 편법으로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고지 증명조항을 강화할 방침임. 이와 함께 2000년 말 폐지될 예정이던 여객 차량의 사용연한을 존속시켜 버스 8년, 회사택시 4년, 개인택시 5년6개월 등 차종에 따른 사용연한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함(건설교통부, 한국경제 2000. 9. 22).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최근 관광버스 사고 등 대형참사를 계기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고 충돌, 전복사고 때 탑승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중량 12t 이상인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버스에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오는 2003년부터 16인 이상 버스 및 총 중량 7.5t 이상 화물차에 바퀴잠김방

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고, △2003년부터 경차의 안전도 수준을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범퍼 충격흡수시험을 승용차와 동일하게 실시하며, △충돌시험 및 연료누출 시험기준도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및 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밴형 화물차의 적재장치 기준도 개선하여 밴형 화물차의 승객실과 화물실 사이를 격벽으로 폐쇄해 차단하고 물품적재장치의 모든 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2001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화물실 바닥면적이 승객실 면적보다 넓은 경우에만 화물차로 분류하기로 함(건설교통부, 한국경제 2000. 10. 5).

◎ 저공해차량 의무화관련 입법의견

-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저공해 자동차 기술과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정부의 지원확대가 요구되는 바, 선진국들의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법규 강화에 맞춰 국내에서도 2002년부터 저공해차량 의무화를 채택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 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초저공해차량(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의 비중을 전체 차량의 5%대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와 정부의 공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서울경제 2000. 9. 19).

◎ 지하수법 개정의견

- 2001년부터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정용 지하수 개발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지하수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함.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시 굴착신고를 의무화하고, △허가기간도 5년으로 단축, 지하수 오염정도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지금까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하루 30t 미만의 가정용 및 농업용 지하수도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종합관리해 나가도록 함. 특히 △지하수 기초조사나 지반지질조사 등 각종 굴착행위로 발생한 폐공도 정해진 법규에

따라 오염방지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밖에 △시·도지사가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이 구역 내에서는 신규지하수개발 및 이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규제개혁위원회,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2000. 10. 23).

◎ 기술사법 개정의견

- 2001년부터 기술사 사무소개설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술사들이 모여 법률사무소처럼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술사 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술사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외국의 기술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며, 기술사가 필요한 기술지원을 조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법인을 제한적으로 인가하도록 함. 또한 기술사 제도를 범부처적으로 운영·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사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과학기술부, 전자신문 2000. 10. 16).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견

- 1999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WTO에서 정한 저작권 보호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 프로그램 역분석 관련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현행 프로그램 해법 및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분석·연구·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분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되, △호환목적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필요한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프로그램 역분석을 허용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의 역분석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이와 함께 기존의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허용범위가 넓어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유럽지침(제6조)’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반영하여 이번 법개정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역분석 규정 외에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배포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방지해 기존 저작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며, △사적복제 범위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여 기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사적복제를 허용하도록 한 조항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적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으로 바꾸기로 함(정보통신부, 전자신문 2000. 10. 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견

- △법정 감청 대상범죄를 현재의 476개에서 246개로 대폭 축소하고, △감청기간도 일반수사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임. △사후 법원 허가시간을 현재의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법경찰관의 긴급감청을 통제하며, △긴급감청 통보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함. △감청개념을 확대해 전자우편(e-메일), 회원제정보서비스(CGU)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통신자료제공의 절차와 감청 사후통지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감청 허가서 기재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불일치시 감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감청장소를 한정하는 한편, △자동녹음도 허용하지 않는 등 감청집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한나라당, 한겨레 2000. 10. 18).

환경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등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위탁 발주하도록 하고, 다이옥신의 배출규제 대상시설을 대형쓰레기소각 시설에서 중형 이상의 소각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환경부, 2000. 10. 28; 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절차를 통일하고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작성체제, 주민의견 수렴절차,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환경부 2000. 9. 22; 환경부 홈페이지).

보건·복지

◎ 생명과학인권·윤리법(가칭) 제정의견

- 생명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바, 인간개체 복제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생명과학인권·윤리법(가칭)’의 제정을 입법청원함(경향신문, 한겨레 2000. 10. 18).
- 인간개체의 복제와 같은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는 생명공학연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술이나 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금지해야 하며, 윤리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윤리적인 이유로 특허가 금지되어야 하는 기술분야>

인간개체복제와 관련된 발명 등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생명공학연구로부터 얻어진 발명, 자연적 상태의 인간 게놈, 샘플 제공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생명공학, 동물에 관한 특허 및 기타 생명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술분야는 금지되어야 함.

<윤리적인 논란이 있는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윤리적 논란이 있는 생명특허의 경우, 특허 승인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허청은 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함.

<생명특허와 관련된 법규의 정비 및 제·개정 의견수렴 절차>

-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공의 질서 또한 선량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의 불특허 사유 중에서, 생명공학과 관련한 불특허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1998년 특허청이 제정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의 내용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함.

- 생명특허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시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국회입법청원안, 2000. 10. 18.

◎ 약사법 개정의견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주사제 허용 및 노인과 의료보호환자를 의·약분업의 예외로 하는 내용의 ‘국민불편관련토의과제’를 제시한 바, ①주사제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되 주사제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주사제 사용에 대한 심사 강화 △종합병원 평가에 주사제 사용빈도 추가 등을 제안하고, ②노인과 의료보호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노인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경향신문 2000. 11. 10).
- 예외조치가 남발되면 의·약분업은 빈 꺾테기가 불과한 바, 약물 오·남용의 피해자인 노인은 반드시 의·약분업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보호급여 지급방식을 개선해 불이익을 없애야 함(이강원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경향신문 2000. 11. 10).
-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의·정(醫·政) 합의내용은 환자 입장에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분업의 틀이 외형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환자 권리보다 의료계 입장을 배려했던 것으로 ①우선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키로 함으로써 환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처방료를 진찰료와 분리한 것은 임의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합하는 것이 당연하며 통합하더라도 환자부담이 안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본인부담금이 높은 종합병원은 액수가 높아질 수 있음. 심장병 고혈압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하여 장기간 질병을 앓는 환자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됨. ②처방전 발행매수와 양식을 의약계 인사가 참여하는 ‘처방서식개선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바, 환자와 약국용 2부를 앞으로 1부만 발행하기로 한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임. ③E메일과 팩스를 이용한 처방전은 지금처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편의를 감안해 ‘보조적 역할’을 허용함. 병원에서 팩스로 처방전

을 보내 약을 지어놓게 한 뒤 처방전 원본을 갖고 가면 약을 내주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④처방전에 원내 주사제 사용여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부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는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면 되고 주사제 사용여부를 알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주사제와 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약사가 미리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예상됨(동아일보해설 2000. 10. 25).

법원 · 법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의견

- 시위도중 연행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알몸 수색을 벌여 물의를 빚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현행범 중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신체검사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경찰청, 경향신문 2000. 10. 17).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남북 화해 · 협력시대를 맞아 현행 ‘국가보안법’의 6~7개 조항을 개폐하기로 하고,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 중 대표적 인권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주요 개정대상으로 결정된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 제10조의 불고지죄, 제18조 참고인 구인, 유치 규정, 제19조 구속기간 연장 조항, 제21조 상금지급 조항 등임. 특히 제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현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조항에서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며, 제7조의 찬양고무죄 중 단순 찬양고무죄는 삭제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에 가입해서 선전 · 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하며, 그동안 인권단체로부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완전폐지하고,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50일에서 일반 형사범과 같이 30일로 단축하도록 하며, 이 밖에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 · 정보기관 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참고인 구인장소의 한정 조항등을 우선 개정하여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임(민주당, 경향신문 2000. 9. 17; 동아일보 2000. 9. 17).
-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던 냉전체제 하에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실질적 개선없이 각 정권에 의하여 심각한 인권탄압 도구로 오 · 남용 되어 온 바, 현재의 남북 화해분위기에서 법률적용상의 자의성이 더 커진만큼 남북관계와 인권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장에게 몰수품의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방송법’ 등 22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이 삭제되어야 함(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입법청원』, 한겨레 2000. 10. 26).

◎ 민법 개정의견

-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동성동본간 혼인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 제도를 신설,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되어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며, △자기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남편 뿐 아니라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소송제기 기간도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신설하여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 함(법무부, 한겨레 2000. 10. 4).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서 싸운 학생운동세력이 제적과 강제징집 등의 고통과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이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보완이 요망됨. 이를 위하여 우선 이번 법률에서 소홀하게 취급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가 요구됨. 명예회복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종류 적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적용한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이 있어야 함(김근태, 김문수, 심재원 의원, 김세균 서울대 교수, 조상호 나남출판 대표 등 170여명의 ‘71동지회’, 동아일보, 한

겨레 2000. 10. 4; 중앙일보 2000. 10. 24).

◎ 반공익사범 척결관련 입법의견

- 부정·불량식품, 교통사고, 환경사범 등 3대 반공익 사범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법령 정비를 통하여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식품 등의 위·변조, 유해물질 첨가 행위에 대한 벌금도 해당 식품 소매가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밀렵동물 가공품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법령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사회관계장관회의, 2000. 9. 20; 내외경제, 한겨레 2000. 9. 21).

◎ 배심제 및 참심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국민주권주의 원칙상 주권자인 국민이 사범의 주체로서 사범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참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는 바, 배심제는 일반시민들이 재판에 참여,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참심제는 법관과 일반인들이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독일 등 유럽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음(양건 한양대 법대 학장).
-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소인부제를 도입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간단한 양형심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선고하도록 하여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함. 실효성 있는 국선변호를 위해서 피고인 등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거나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손기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교통·건설·임대차·의료·노동 등 전문분야의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할 중재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가재환 변호사).

: 이상 대법원 주최,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2000. 10. 23.; 경향신문 2000. 10. 22; 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2000. 10. 23; 중앙일보 2000. 10. 24; 법률신문 2000. 10. 26.

◎ 북한관련 법령 용어 정비의견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 괴뢰집단’, ‘미수복 지역’, ‘접적지역’ 등 북한에 대해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23개 각종법령을 정비할 예정임.

<용어정비 대상 법령>

정부의 용어정비 우선 대상은 북한을 ‘괴뢰집단’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수복지역’, ‘접적지역’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 23개에 달함. 남북한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등 대북 관련 법령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임.

<소관부처별 용어정비 대상 법령>

- 재정부(7개)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자산평가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법무부(7개)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 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호적법,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 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호적법시행규칙

- 행정자치부(6개) :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이북5도에관한특별 조치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 위촉에관한규정,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고시

- 교육부(1개)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 농림부(1개) :

농지법시행령

- 보건복지부(1개)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이상 통일부, 한겨레신문 해설, 2000. 9. 14.

◎ 사법시험법(가칭) 제정의견

-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일정 학점(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제한하고, 어학시험을 토익이나 토플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가칭)’ 제정안이 의결됨. 제정안은 2006년부터 사시 응시자격을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되, 독학 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도 인정하기로 하고, 1차 시험 중 영어시험은 2004년 부터 토플, 토익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2001년부터 경제학 등 비법학 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법률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 법철학 등을 신설하기로 함(대한매일신문 해설, 2000. 10. 8; 세계일보, 한겨레 2000. 10. 31).

◎ 사형제도 폐지관련 입법의견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와는 별도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하여 종신형의 도입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종신형이라는 돌다리를 놓아 사형을 대신 활용해야 함.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현행법상 무기수는 10년 이상 복역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면 석방이 가능하므로 이보다 죄가 중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종신형 도입론자들은 생명을 빼앗는 대신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입장임. 흉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종신형은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의 오

판에 의한 생명박탈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독일은 1949년 기본법(헌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후 30여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1981년 이후에는 15년 이상의 형집행과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신형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50개 주 중 30여개 주가 법률상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마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과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일본에서도 종신형 도입을 조건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기쿠다 고이치(菊田幸一) 일본 메이지대 교수).

- 종신형에 대해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사형보다 더 잔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사형과 종신형은 삶과 죽음의 차이이므로 누가 뭐라 해도 종신형이 더 인간적인 형벌임(허일태 동아대 교수).
- 사형은 응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원시형벌의 잔재일 뿐이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인 사형제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함(심재우 고려대 교수).

: 이상 동아일보 2000. 10. 16.

◎ 자금세탁방지 관련 입법의견

- 범죄수익의 규제는 돈 세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부응하는 국내법령의 입법화로 불법자금의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돈 세탁의 자금원이 되는 범죄의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음. 현재 마련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동 법안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종사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한 신고의무에서 면제되는 바, 그 효율성이 의문시 됨. 그러므

로 독일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임(돈세탁법 제2조).

- 본법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의 죄를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외국처럼 마약류등의 거래수익을 차단하려는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색출하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적이 더 앞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본법으로는 '형법'상의 뇌물죄와 '상법'상의 배임죄 정도밖에는 없음. 이러한 점에서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로비자금, 리베이트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행위>

- 법안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혹은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상의 행위유형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범죄수익 등의 출처, 이동, 위치 등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돈 세탁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규정에 의하여 포섭이 가능하지만 알선행위를 정범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금융기관 종사자 관련 규정>

- 돈 세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 불가피함. 법안 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등)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서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동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오히려 금융기관 내부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는 부서(예를 들면 ‘금융정보분석기구’)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혐의거래를 직접 검찰이나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를 한 금융기관의 종사자나 금융기관은 검찰이나 국세청의 수사·질문에 응해야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혐의 거래보고에 대하여 소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가칭)안’ 제3조(의심스런 거래의 보고등)는 ‘①금융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제6조의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기구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 역시 의심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음.
-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기한을 ‘지체없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거래후 48시간 이내’로 규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서면에 의한 금융정보제공요구>

-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금융기관 종사자의 고의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고의 추정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자금세탁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되지만 고의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너무 많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낳을 수 있는 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각종 유형항목을 규정화하고 이 경우에 신고를 하

지 않았다면 고의를 추정하여야 할 것임.

- 본법의 범위에 '형법'상의 사기죄(제347조)와 횡령죄와 배임죄(제355조 제1항, 제2항)를 포함시켜야 함. 돈 세탁 처벌법의 실효성 여부는 본법의 범위에 달려있는 바, 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이상 박상기 연세대학교수,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주최, 『자금세탁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2000. 10. 16.

◎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의견

- 재외국민의 호적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임시특례법은 시한이 여러차례 연장되었지만 지난 1999년 한해동안 접수, 처리된 재외국민 호적사건이 1만8천여건에 이르는 등 존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임시특례법의 명칭을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으로 바꾸고 시행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기로 함.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 등 호적정리와 정정을 돕기 위하여 지난 1973년 제정된 뒤 시한이 3차례 연장된 임시특례법은 2000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됨. 특례법은 각종 신고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도 본인과 친족 등으로 제한되는 '호적법'과 달리 구비서류가 간단하고 과태료도 없을 뿐 아니라 신고자도 본인 외 이해관계인으로 광범위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음(법무부, 경향신문, 세계일보 2000. 9. 23).

◎ 헌법소원관련 입법의견

-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있는 심판청구 기간을 최장 1년 정도로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일보 2000. 10. 27).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형 등을 받은 뒤 복권된 후에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이 말소되지 않아서 취업과 비자 취득 등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경향신문 2000. 10. 17).

◎ 호주제 폐지관련 입법의견

-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일제시대의 잔재일 뿐으로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의 형식적 개념인 가(가문, 집안)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이 있음.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여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 제도이며, 특히 일부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이 아니고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이고, 호주제가 강화하고 있는 남존여비 풍조에 따라 수많은 여아들이 낙태 당해 성비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에서 호주제가 존속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강기원 전 여성특위 위원장, 광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윤명선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원장).
 - 1989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가족법상 남녀차별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아들을 호주승계 1순위자로 규정하는 등 문제로 남아있는 바,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여성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호주제를 폐지해야 함(박소현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간사).
- : 이상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주최,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회, 2000. 10. 25; 한겨레 2000. 10. 26.

◎ 회사정리법 개정의견

- ‘회사정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부실기업은 채권단의 2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회사정리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정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임. 이와 함께 제1회 관계인 집회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정리계획안의 작성·제출시한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함(법무부, 한국일보 2000. 9. 23).